

※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 공고 제2024-005호

2024년도 제2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 공고

2024년도 제2차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지정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관련기관 및 연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사업단장

I. 개요

※상세 지원내용은 공고된 과제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요망

세부 사업명	공고단위 (RFP 명)	지원규모 (백만 원)	지원예상 과제 수	지원기간 (연구개발기간)
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수집	1-1. 중증질환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8,582.1	3	5년(3+2) 이내 *1차년도 3개월 (24.10.~ 28.12.)
	1-2. 일반 국민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40,135.2	14	

(참고)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24~'28년)

▶ 참여자 동의를 기반으로 검체(혈액, 소변, 조직)를 확보하고, 임상·유전체 데이터, 공공 데이터 등을 수집·생산하여 R&D 인프라로서 '데이터뱅크'를 구축하는 사업

* (범부처 사업) 보건복지부(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 운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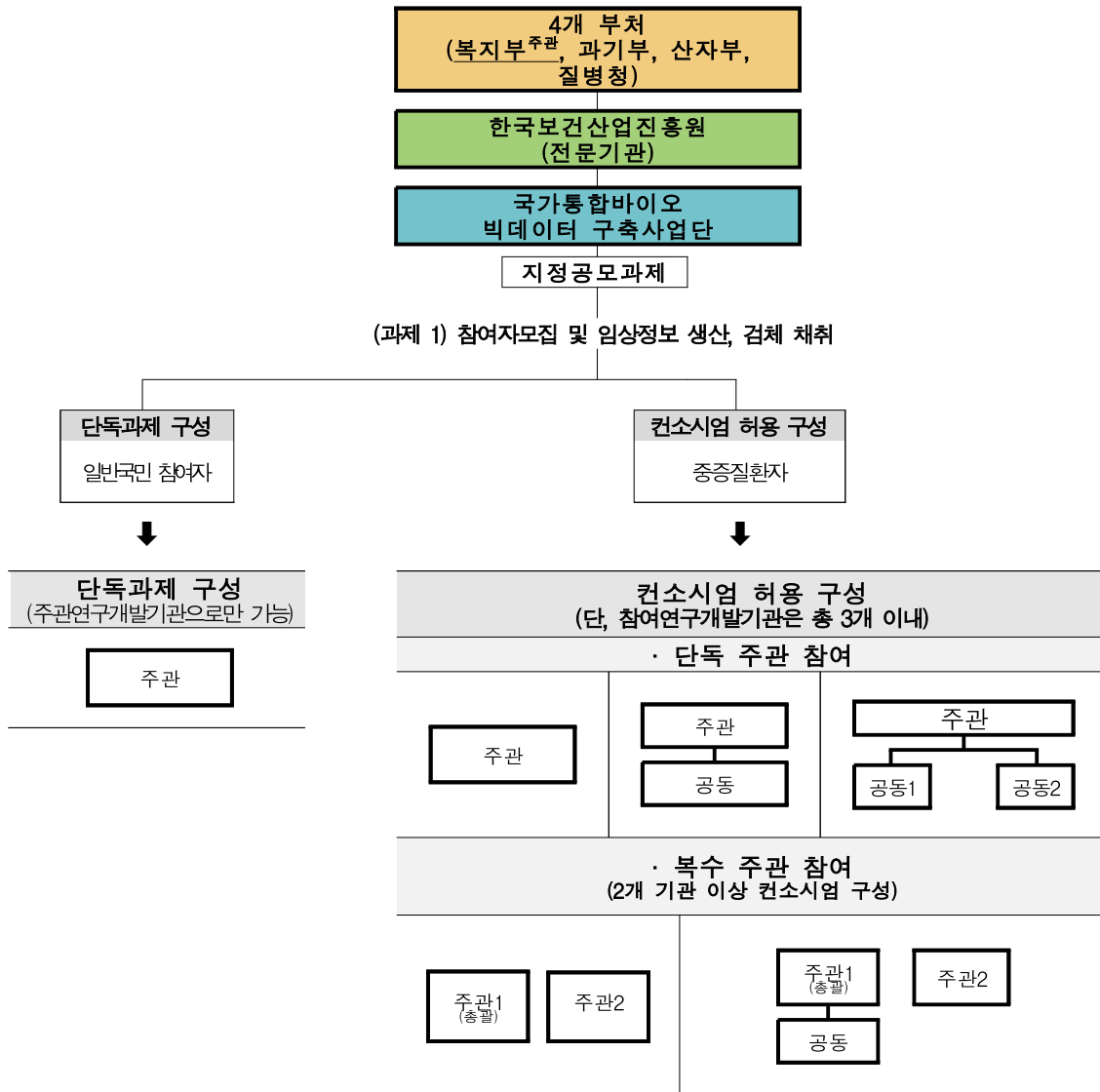


II. 사업추진체계

1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 과제제안요청서(RFP)에 제시된 과제구성 요건을 반드시 반영해야 함

< 지정공모과제 추진체계 및 과제구성 요건 >



Ⅲ. 신청요건

① 연구개발기관 자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 이라 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2조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상세 지원 대상은 과제제안요청서(RFP) 별로 확인 필요

※해당 사업의 RFP상에서 지원자격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RFP에서 지원 자격을 우선 적용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연구개발전담부서 불인정)

※ 연구개발기관은 국내에 소재한 법인으로 한함

② 연구책임자 자격

- 각 과제 RFP에서 별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 ※ 연구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 이직 등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업단에 사전문의 바람

③ 신청 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라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신청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초과한 연구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포함)가 참여 및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 연구기관 등 130%)를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최종 과제제안요청서(RFP)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는 'RFP 기획 보안서약서' 를 작성하고 해당 RFP 공모 시 주관·공동연구책임자로 신청 제한
- 기업은 연구개발기관 종류(주관/공동)에 상관없이 동일 과제제안요청서(RFP) 내 중복 신청 불가

IV. 신청 방법

1. 공고 및 접수

※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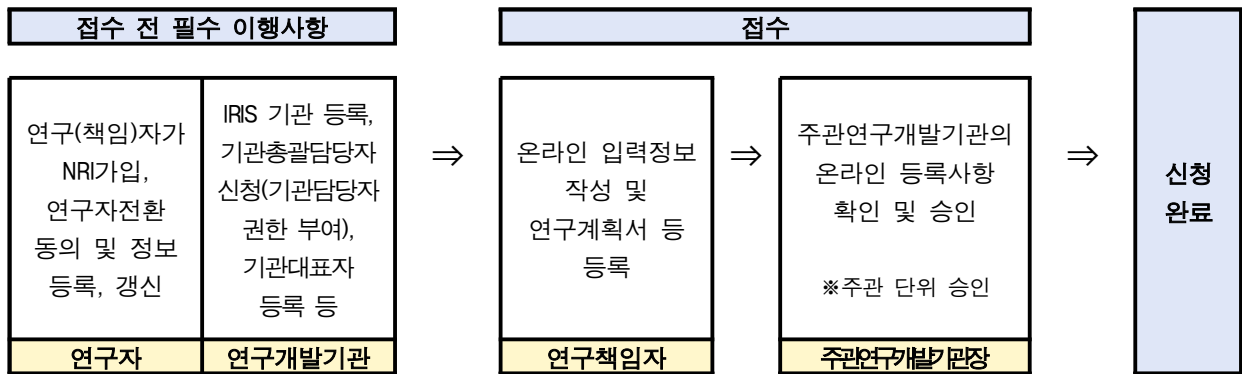
▶ 2024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IRIS*(<https://www.iris.go.kr>)를 통해 과제신청, 평가 및 관리업무를 진행합니다.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 (공고) 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사업공고
②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사업공고
-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신청

2. 신청 절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업로드 후 주관연구개발기관 확인·승인



※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 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이 있으니 과제신청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로 이동하여 연구자 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 ③ NRI 내 학력/경력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 정보등록 필수

* 경력정보에서 근무(소속)부서 등록 필수

**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 수행 중/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 ① 및 ②: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 ③: 연구책임자만 필수

- (연구개발기관) IRIS 기관등록, 기관총괄담당자 신청(기관담당자 권한부여), 기관대표자 등록 등

※ 기관대표자 및 기관(총괄)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국가연구자번호 발급)가 필수이며,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신청 기간 시작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

▶ IRIS 문의처: IRIS 콜센터 1877-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

3 공고 및 접수기한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시까지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 접수가 최종 완료된 것

공고단위(RFP)	연구책임자 과제신청 (전산입력) 마감일시	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또는 공문제출) 마감일시
1-1. 중증질환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2024. 9. 13. (금)	2024. 9. 13. (금)
1-2. 일반 국민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18:00	18:00

* 기간 내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완료를 원칙으로 함

** 연구자가 제출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기관담당자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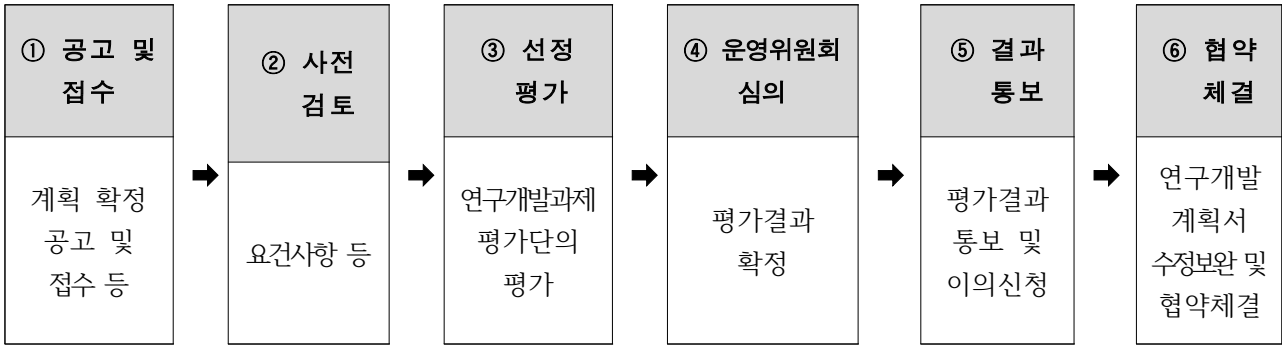
※ 전산입력(접수) 시작일 및 마감일 제외 24시간 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관승인을 완료하여야 접수가 완료되며, **기한 내 기관 미승인시에 접수 대상에서 제외됨**

※ 과제신청 마감시간 임박 시(마감 2일전부터) 전산접속 폭주로 인하여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감시간으로부터 충분한 여유시간을 갖고 신청 요청

V. 평가 절차 및 방법

1 평가절차



① 공고 및 접수

- 공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www.iris.go.kr)

② 사전 검토

- 사업단에서 제출서류, 신청자료, 차별성 등 검토

③ 선정 평가

- 산,학,연,병 등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평가단’)에서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계획서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을 토대로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 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과제의 파급효과 등에 대해 평가
- 평가단 의견에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조정 가능

④ 운영위원회 심의

-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확정
- 심의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과제 구성 및 예산 규모 등 조정 가능

⑤ 결과 통보

- 사업단은 선정여부,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
-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가능

⑥ 협약체결

- 평가단/운영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개발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과제 구성,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을 조정한 결과를 반영한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확인 후 협약체결

②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평가만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접수과제 수*에 따라 서면평가를 실시하여 발표평가 대상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 선정과제 수가 5개 이상인 과제의 경우, 선정예정 과제 수의 2배 초과로 접수될 시 서면평가를 통하여 2배 이하로 발표평가대상 과제 수를 정함
 -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사업단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

③ 평가 기준

○ RFP 별 평가 기준

- (중증질환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평가항목(배점)	
대 항목	소 항목
1. 기관역량 (30)	○ 기관역량 - 중증질환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역량이 우수한가?
2. 모집체계 (40)	○ 모집계획 - 참여자 모집을 위한 기관의 전략 및 운영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차별성을 포함하고 수행 계획이 충실한가? ○ 모집목표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모집역량 대비 모집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 모집기반 - 참여기관의 유사사업 운영 경험이 많은가? - 본 과제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높은가? - 참여자 모집조직 운영 방안이 적절한가?(전담·참여인력 운영방안 포함) - 본 과제 활용 가능시설 및 장비가 적절한가?(공간·동선 운영계획 포함)
3. 동의구득 및 자원확보 (20)	○ 동의 구득 및 자원(검체, 임상정보 등) 확보 및 조직DNA 생산 - 자원확보 표준화 프로세스 운영방안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차별성을 포함하고 수행 계획이 충실한가? - 본 과제 필요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및 이를 위한 기관(혹은 기관 내 정보통신 분야) 협조계획이 우수한가? (전자동의체계 구축·운영, 임상정보 자동추출을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연계·운영 등 포함) - 추적조사 세부계획이 적절한가?
4. 위험관리 (10)	○ 위험관리 - 참여자 미확보 시 위험관리계획이 우수한가? - 본 과제 전문인력 지속 확보 및 유지방안이 우수한가? - 다 기관 참여시 확보 자원 표준화·질관리 계획이 우수한가?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일반 국민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평가항목(배점)	
대항목	소항목
1. 기관역량 (30)	○ 기관역량 - 일반 국민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역량이 우수한가?
2. 모집체계 (35)	○ 모집계획 - 참여자 모집을 위한 기관의 전략 및 운영계획을 수행하는데 있어 차별성을 포함하고 수행 계획이 충실한가? ○ 모집목표 및 목표 달성 가능성 - 모집역량 대비 모집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이 높은가? ○ 모집기반 - 본 과제 참여인력의 전문성이 높은가? - 참여자 모집조직 운영 방안이 적절한가?(참여인력 운영방안 포함) - 본 과제 활용 가능시설 및 장비가 적절한가?(공간·동선 운영계획 포함) ○ 본 과제 참여를 위한 추가 투자계획
3. 동의 구득 및 자원 확보 (25)	○ 동의 구득 및 자원(검체, 임상정보 등) 확보 - 자원 확보 표준화 프로세스 운영방안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차별성을 포함하고 수행 계획이 충실한가? - 본 과제 필요 시스템 구축·운영 계획 및 이를 위한 기관(혹은 기관 내 정보통신 분야) 협조계획이 우수한가? (전자동의체계 구축·운영, 임상정보 자동추출을 위한 기반 시스템 구축·연계·운영 등 포함) ○ 반복 검진 수검자 검진데이터 확보 및 제공방안 - 반복 검진 수검자의 검진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제공하는 방안이 우수한가?
4. 위험관리 (10)	○ 위험관리 - 참여자 미확보 시 위험관리계획이 우수한가? - 본 과제 전문인력 지속 확보 및 유지방안이 우수한가?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항목(배점)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③ 지원대상 과제 기준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 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Ⅵ. 관련 법령 및 규정

-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등 동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통합가이드라인」 등

※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세부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VII. 기 타

1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신청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규모를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2024.2.29. 개정)에 따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개발비를 산정해야 함
- 기관유형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 (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장비비 다.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해당 연구개발기관)정부지원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x 100

※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RFP 기준 적용

2 예상 연구성과에 대한 계량적 명시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단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시점, 총 연구개발기간 종료 시점까지 예상되는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양식에 따라 계량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제시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달성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하여야 함

3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유의사항

- 연구시설·장비(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도입 심의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연구장비 예산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을 작성·첨부하여 ‘평가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야 함

-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할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 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에서 심의 실시(선정과제 별도 안내)

④ Single IRB 심의

- 본 과제는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하므로 IRB 심의가 필수임. 본 과제는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활용 측면에서 통일성 있는 기준과 절차 마련을 위해 단일 IRB 체계를 운영하고 그에 따라 심의를 받고자 함.
- 사업단의 단장이 연구책임자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단이 지정한 단일 IRB에서 승인받게 되므로, 본 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 기관은 별도의 IRB 심의가 필요하지 않음. 연구개발기관은 국가 통합바이오빅데이터구축사업단이 안내하는 단일 IRB 체계에 따를 수 있도록 협약서를 제출해야 함.

⑤ 박사후연구원 고용증빙 서류 제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원 중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이 있는 경우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에 박사후연구원의 근로계약서 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⑥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권 국가 귀속

- 본 사업은 ‘연구개발을 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은 국가로 귀속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공고안내서 참조

VII. 문의처

1] 사업공고 열람

- 사업공고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2] 문의처

- 과제 내용(RFP) 안내, 공고 및 평가 관련
 - 사업단 :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단 과제관리지원팀

구 분	공고단위(RFP)	접수·사업내용(RFP)·평가 일정/절차 안내	
		담당자	연락처
1. 참여자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수집	중증질환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현애랑	02-789-9723 ohsro2@khidi.or.kr
	일반 국민참여자 모집 및 임상정보 생산, 검체 채취	이상헌 이미연	02-789-9722 ford1114@khidi.or.kr 02-789-9724 my7101@khidi.or.kr

- 과제 접수(시스템 입력)관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1877-2041)

※ IRIS 콜센터 운영시간 : 9:00 ~ 18:00